

대한상의 브리프

뉴스1 권구용 기자



제126호 2020년 7월 13일



우리나라 금융업 진입 요건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라 핀테크 스타트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금융업종별 진입요건의 국제비교,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 진입장벽 완화 3법’ 어떤가?

‘귀갓길에 사고라도 나면 보상해 주겠다’. 700원짜리 ‘귀가안심보험’이 한 스타트업 App에 나타나 인기를 끈 적이 있다. 보험 하면 설계사를 만나 여러 장에 사인을 해야 가입할 수 있던 것이 스마트폰에 쏙 들어왔다.

핀테크(Finance+Technology) 시대다. 과거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보험업과 신용카드업, 그리고 전자금융업에 스타트업 ‘러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진입장벽으로 혁신적 금융생태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금융업 자본금 요건은 금융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보다 엄격하다. 이런 실정을 반영하듯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60개 중 우리 기업은 ‘한 곳’뿐이다.

전문가들은 IT 혁신수요가 높은 보험업(인슈어테크), 전자금융거래(페이먼트)의 진입장벽을 부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별도로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보안·인증, 송금·환전, 신용평가·대출, 투자중개·일임·자문 등의 혁신수요를 건별(case by case)로 테스트하는 것이 어떤가 주장한다.

이번 브리프는 ① 소액보험회사 설립요건 완화(보험업법 개정안) ② 다양한 페이먼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후불결제와 新결제서비스 허용(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③ 금융 샌드박스 테스트가 성공하면 법령정비 의무를 부여(금융혁신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금융 진입장벽 완화 3법’에 대해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금융 진입장벽 완화 3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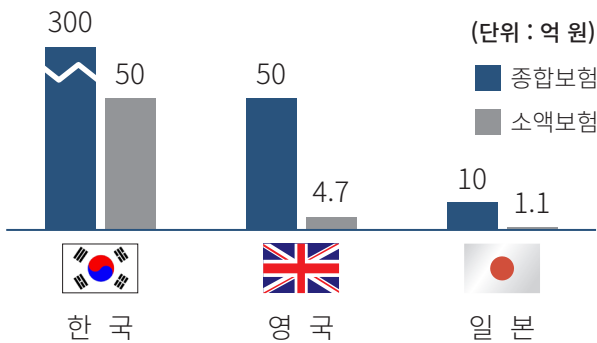
법률	내용	기대효과
① 보험업법	- 소액보험회사 설립요건 완화(50→3~10억 원)	- 생활밀착형 ‘미니보험’ 활성화
② 전자금융거래법	- 신용카드업 인가 없이 소액(50만 원) 후불결제 허용 - 전자금융업 범위 확대를 통한 新결제서비스 허용	- 핀테크 기업도 후불결제 가능 - 융·복합 전자금융 서비스 창출
③ 금융혁신법 (금융규제 샌드박스)	- 법령정비 의무화, 법 개정 시까지 특례기간 연장	- 사업 불확실성 해소 -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① 소액보험사 설립요건 완화(보험업법)

우리나라는 보험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요건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 엄격하다. 여행자보험같이 간단한 소액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를 설립하려 해도 최소 5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해 자금력이 부족한 핀테크 스타트업에는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



[보험업 자본금 요건 비교]



미국(뉴욕주)은 리스크가 낮은 ‘미니보험’의 납입 자본금 요건이 1.2억 원(1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일본도 보험기간 2년 이내 상품만 취급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이 1억 1000만 원(1천만 엔) 수준으로 고독사보험(장례식·유품정리 비용), 가재보험(지진 등에 따른 살림품 피해 비용), 반려동물 보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미니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다.

기존 보험업의 자본금 요건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큰 진입장벽이 되는 만큼 해외처럼 리스크가 낮고, 연간 보험료, 보험기간·금액 등에 상한을 둔 보험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ex. 50 → 3~10억 원). 이 경우 펫보험·여행자보험처럼 소액·단기 상품을 취급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좀 더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될 것이다.

② 新결제서비스 허용(전자금융거래법)

소액 후불결제 허용 이동통신사도 통신료에 후불 청구되는 방식으로 약 50만 원 규모의 소액결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데 정작 핀테크 서비스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에는 충전금액이 부족해 결제를 못 할 수도 있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후불결제를 못하는 불편을 겪기도 한다.

후불결제 서비스를 하려면 신용카드업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신용카드업의 자본금 요건은 200억 원으로 미국(36억 원), 영국(2억 원) 등 주요국에 비해 시장진입의 문턱이 매우 높아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과거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그로 인한 대출 부실사태를 겪으면서 신용카드 규제 강화와 함께 건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신용카드업 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대안으로 핀테크 기업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업무 범위에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소액의 기준은 국내 체크카드나 통신사의 사례를 참고해 50만 원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핀테크 기업도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없이도 후불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해외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 페이팔의 경우, 신용카드 제휴 없이 신용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호주의 ‘에프터페이’, 스웨덴의 ‘클라르나’ 같은 핀테크 유니콘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융·복합 전자금융서비스 도입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채택하고 있어 할 수 있는 업무가 소액송금, 간편결제 등으로 제한된다. 여러 기술을 융·복합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각각의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해외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인 ‘마이페이먼트’나 ‘종합지급결제업’ 등에 대한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하는 업종으로 앱을 통해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 결제·송금을 처리하는 ‘오픈뱅킹’을 포괄하는 업종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은 하나의 라이선스로 다양한 금융업을 영위해 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이를 이용하면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인출하고 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新전자금융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해 현행 포지티브 체계의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정해 업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 예를 들어 핀테크 업체도 독자적으로 계좌를 발급하도록 허용해주는 대신 이자 지급이나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업무 단위를 ‘쪼개’서 일부를 전자금융업에 ‘추가’해주는 식이다.

영국 유니콘 기업인 ‘레볼루트(Revolut)’는 2017년 간편결제·송금·인출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는 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24개국 통화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험, 펀드 등도 판매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현재 기업가치가 7.2조 원(60억 달러)으로 6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③ 샌드박스 법령정비 의무화(금융혁신법)

지난해 제정된 ‘금융혁신법’을 통해 ‘금융 샌드박스’로 1년 새 100여 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특례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특례기간이 최대 4년(기본 2년+연장 2년)이다. 다양한 서비스에 시장진입의 기회를 줬지만, 특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거나 핀테크 기업의 성장이 더더 기존 법령상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특례기간과 관련 법 개정 사이의 ‘갭(gap)’을 메워줘야 한다. 특례기간 중 관련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 특례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규정을 ‘금융혁신법’에 추가해볼 만하다. 이는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핀테크 창업을 촉진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진입장벽 완화 3법’ 어떤가?

산업 전반에 걸친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묶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한 대표적인 예가 데이터 3법인데, 보호와 산업화라는 양극단의 이슈를 놓고 타협점을 찾아 데이터 산업의 문턱을 확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앞서 언급된 ‘금융 진입장벽 완화 3법(보험업법·전자금융법·금융혁신법)’도 마찬가지다. 패키지로 처리할 경우 법 개정의 속도를 높이고,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금융업의 진입장벽 완화가 우리나라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길 기대해본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20년 7월 13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8	2019 ^(E)	IMF		OECD	
			2020 ^(P)	2021 ^(P)	2020 ^(P)	2021 ^(P)
한국	2.7	2.0	-2.1	3.0	-1.2	3.1
세계	3.6	2.9	-4.9	5.4	-6.0	5.2
미국	2.9	2.3	-8.0	4.8	-7.3	4.1
중국	6.6	6.1	1.0	8.2	-2.6	6.8
일본	0.8	0.7	-5.8	2.4	-6.0	2.1
EU	1.9	1.2	-10.2	6.0	-9.1	6.5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7	2018	2019	'20.2월	3월	4월	5월	6월
원/달러	1,131	1,100	1,166	1,194	1,220	1,225	1,229	1,210
원/엔(100엔)	1,009	996	996	1,085	1,135	1,135	1,146	1,125
원/위안	167.5	166.4	166.4	170.5	173.8	172.9	172.5	170.7
원/유로	1,276	1,299	1,299	1,302	1,350	1,332	1,339	1,362
유가(Dubai)	53.2	69.7	63.5	54.2	33.7	20.4	30.5	40.8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7	2018	2019	'20.2월	3월	4월	5월	6월
산업생산	2.6	1.6	0.6	4.9	0.9	-5.3	-5.6	-
소매판매	1.9	4.3	2.4	-2.4	-8.0	-2.2	1.7	-
설비투자	14.4	-3.6	-6.2	16.0	10.4	1.5	3.6	-
수출	15.8	5.4	-10.4	3.5	-1.6	-25.5	-23.6	-10.9
수입	17.8	11.9	-6.0	1.4	0.2	-15.8	-21.0	-11.4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